

2020년 주민지원협의체 종합감사보고서

1. 감 사 기 간 : 2020.12.18(금) ~ 12.31(목) / 2주간
2. 감사대상 / 범위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회계
3. 감 사 방 법 : 서면 및 현장 확인 감사
4. 주 요 감 사 사 항
 -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의 적정 여부
 - △ 기금 집행 및 예산·회계처리 적정 여부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감사 김 중 표)

2020년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종합감사 보고서

■ 개요

고양에너지환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기금 집행 및 협의체 운영 전반에 대한 2020년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협의체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개선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협의체 운영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감사근거

- △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기금 집행기준(고양시 자원순환과)
- △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정관(고양시 주민지원협의체)
- △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고양시 회계과)
- △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고양시 자원순환과)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계약법)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
- △ 고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고양시 행정지원과)

■ 감사기간 : 2020. 12. 18(금) ~ 12. 31(목) / 2주간

■ 감사대상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회계

■ 감사범위 : 2020. 1. 29 ~ 2020. 12. 31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 감사방법 : 서면 및 현장 확인 감사

■ 주요 감사사항

-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의 적정 여부
- △ 기금 집행 및 예산·회계처리 적정 여부
- △ 사업의 적정성 및 예산편성의 적절성 여부
- △ 주민지원협의체 정관의 적절성 여부

■ 2020년 주민지원협의체 일반현황

△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현황

- 임기 : 2020. 1. 29 ~ 2022. 1. 28(2년)

구분	계	주민대표	시의원	전문위원
정원	15	11	2	2
위촉	12	10	2	0

※ 2020년 해촉 2명, 추가위촉 1명, 부족인원 : 3명

△ 2020년 주민감시원 현황

성명	위촉기간	주소	비고
신송희	2020. 4. 1. ~ 2021. 3. 31.	윈스턴파크1차	
손영선	2020. 4. 27. ~ 2021. 4. 26.	요진와이시티	
김종덕	2020. 5. 20. ~ 2021. 5. 19.	요진와이시티	

△ 2020년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주민대표 현황

성명	위촉기간	주소	비고
손남옥	2020.05.01.~2022.04.30.	요진와이시티	
조영미	2020.05.01.~2022.04.30.	윈스턴파크2차	

△ 2020년 주민지원기금 사업진행 현황

연번	내 용	예산	집행	잔액	비고(%)
1	주민지원협의체 일반운영비 (기금5% 이내)	42,216,420	38,880,296	3,336,124	92.0
2	냉난방비 지원사업	475,200,000	237,493,180	237,706,820	49.9
3	공기정화비 보조사업	118,800,000	121,002,000	-2,202,000	101.8
4	환경, 위생 개선사업	26,650,320	16,800,000	9,850,320	63.0
5	체육공원 설치 및 통학버스 지원사업 등	107,000,000	80,941,730	26,058,270	75.6
6	환경 조사, 연구 사업	50,000,000	-	50,000,000	0
7	주민홍보 및 주민재생에너 지 회수 관련 교육사업	12,000,000	1,804,500	10,195,500	15.0
8	타지역 쓰레기 처리시설 운 영실태 및 현황조사 사업	12,461,770	-	12,461,770	0
합 계		844,328,510	496,921,706	347,406,804	58.9

■ 2020년 주민지원협의체 종합감사 결과

△ 분야별 감사결과

1. 사무행정 및 일반운영관리

가) 장려사항

- 대외 공문서, 회의록, 사업증빙서류 정리 양호
 - ↳ 문서수신 : 55건, 발신 : 67건, 계 122건
- 적극적인 예산사업 발굴 및 예산집행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 양호
- 주민편익시설 이용 및 환경상영향조사의 적극적인 참여 양호
-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시청 방문 및 편익시설 사용을 위한 노력
- 홈페이지 개설 등 주민홍보를 위한 노력

나) 개선 / 보완사항

① 사무행정업무 분야

- 행정업무 간소화 필요

- ↳ 행정서류의 원본과 복사본을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사무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한 원본 보관만 필요(필요시 복사본 사용)
- ↳ 월별회의록 고양시 발송업무 불필요(회의록 홈페이지 공개)

-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 확인 결과

- ↳ 회의 후 식대 영수증은 세부내역이 포함된 영수증 발급요망
- ↳ 사업별 회계지출서류는 “주민지원기금 집행기준”에 의한 증빙서류 보장요망(사업진행 사진 첨부요망)

- 일상경비 지출내용 확인결과

- ↳ 비품구입 시 사진첨부 요망(주민지원기금 집행기준 참고)

【증빙서류】 지출품의서, 구매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물품납품 사진, 지출결의서, 기금 결제전용 카드영수증 등

② 사무보조원운영 분야

- 사무보조원 유급휴가 초과사용

- ↳ 2020년 사무보조원 유급휴가 사용현황

구분	2020년 발생일수	2020년 사용일수	초과사용일수
일수	7일	13일	+6일

- ↳ 계약기간 : 2020. 3. 23 ~ 2022. 1. 28(일일 근무시간 4시간)

↳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고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 연차유급휴가, 제28조 경조휴가 및 병가

: 근로계약서 7항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부여

↳ 결과

: 유급휴가 초과 사용에 대한 근거부족

(사전승인 및 사후보고 시 근거서류 첨부요망)

: 유급휴가 승인권자는 휴가발생일수 범위 내에서 승인 필요

- 사무보조원 급여체계(임금)

↳ 근로계약서 : 월 급여 100만원(세후금액),

상여금(하계휴가비10만원/7월), 명절휴가비 각10만원(설날, 추석)

↳ 결과 : 사무보조원의 급여체계 개선 필요

월 정기회의 준비 및 진행지원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필요

2021년 고양시 생활임금 시급10,140원 지급 요망

③ 감시원 중임제한에 대한 복무규정의 적용에 대한 확인 결과

↳ 근거 :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 규정[시행 2020.06.05.]

제5조(위촉) ③ 주민감시요원의 근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중임할 수 없다. <개정 2020.6.5.>

↳ 결과 : 복무규정 개정 시행일 이전 채용자의 경우 현 규정 미적용

④ 주민지원협의체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필요

↳ 공지사항 공개건수 : 10건 (2021년 12월 현재)

↳ 주민지원협의체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내용 범위 설정
(2020년 8월 정기회의)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지원협의체 정관 ○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 주민감시원/주민기금운용위원 추천 및 사무보조원 채용과 관련된 사항 (공고, 최종선정 등) ○ 정기 회의록 ○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련사항(기금운용계획, 집행실적/결과)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발에 관한 사항 ○ 주민지원협의체 홍보사항 및 사업추진경과 ○ 반입규정 위반 처리현황(월별) ○ 고양시의회 환경분과위원 시정 질의사항 ○ 기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게시내용 등 |
|--|

↳ 결과 : 부적절한 사진 게시 삭제(현지사정, 2월/3월 정기회의 사진)
: 공지사항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주민지원협의체 홍보 필요

⑤ 사업별 전담위원 활용 미흡

- 사업별 전담위원 선정 현황[3월 1차 임시회의(3.20)]

사업명	전담위원	세부 준비 사항
냉·난방비 보조	박주용 신용화	- 대상 세대수 산정 및 정산(내곡동 포함)
공기정화기 필터 교체 (원스톤 외벽 도색)	정병현 엄상현	- 와이시티 세대별 공기정화기 필터 교체 - 원스톤 외벽 도색, 내곡동 별도 지원
폐기물처리 현장 조사	손제민 엄상현 심미영	- 위원 외 소요 인원, 준비물 등 준비. 조사결과서 작성
체육시설 설치, 이용 및 통학버스 지원	손제민 김종표	- 아파트 인근 유희지 체육 공간화 - 자녀 통학버스 유지 운영비 지원
환경조사, 연구 및 전문위원 섭외	유병곤 엄상현	토지, 공기 중 유해요소 수치 분석을 위한 유해성분 분류
주민홍보 및 재생에너지 지회수 관련교육	박주용	쓰레기 분류표(종량제 봉투용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대상, 기타)
타 지역 처리시설 운영실태, 현황 조사	김용한 조한욱	소각장 모범 운영사례 시설 조사 및 사전 협의

- 2020년 사업별 전담위원 추진 결과

사업명	전담위원	실 집행위원	비고
공기정화기 필터 교체 (원스턴 외벽 도색)	정병현, 엄상현	박주용	5월 정기회의(5.6)
체육시설설치	손제민	박주용	3월 1차 임시회의(3.20)
통학버스지원	김종표	김종표	

: 분과별 활동을 통한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필요
예) 기획/예산분과, 환경분과, 주민홍보분과 등

2. 2020년 복리증진 및 기타사업 추진결과

가) 통학버스운용 지원 사업추진 결과

- 사업경과 현황

↳ 2020년도 금계초 통학차량 지원 계획(안) 확정(5월 정기회의/ 5회 회의진행)

↳ 투표결과 투표 11명 중 찬성표 1안 7명, 2안 2명, 무효 2명으로 2020년 4천만원 한도내 실지금액의 40% 지원하기로 함.

- 2020년 통학버스 지원결과

구분	계	1차(1~7월)	2차(8~12월)	비고
금액	24,470,610	13,800,600	10,670,010	임차비의 40%

- 개선사항 : 주변영향지역 내 학생에 대한 지원 형평성 유지 필요
(원스턴파크 통학버스 이용희망 학생)

나) 와이시티 공기정화기 필터 사업추진 결과

- 사업경과 현황

↳ 공기정화기 필터사업 결정(5월 정기회의/5.6)

: 투표결과 10명 중 1안(제한경쟁 입찰)7명, 2안(최저가 입찰)3명

↳ 공기정화기 필터사업 업체 선정(7월 정기회의/7.1)

: 참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트리포트' 업체로 선정(2개업체 참가)

↳ 필터사양 선정(8월 정기회의/8.5) 와이시티 실내 필터교체 사업

: 참석위원 10명 중 9명 찬성으로 '해파필터' 선정

↳ 입찰 금액 : 110,000,000원

↳ 코로나19 2.5단계로 인한 계약 연장 : 30일(9월 정기회의/9.23/임원진)

↳ 공기정화 필터사업 진행사항 공유(10월 정기회의/10.7)

: 코로나19 확진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작업이 장기간 중단 되어 계약상 문제가 발생함.

: 기존 교체율 90%에서 잔금 지급을 교체율 80%에서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 재작성하고 잔여 20%에 대해서는 이행보증증권 재발행 요청하기로 함.

↳ 와이시티 공기정화기 필터교체 사업 완료 보고(최종 완료율91%)(11월 정기회의/11. 4)

↳ 와이시티 공기정화기 필터교체 사업 완료 및 잔여 필터 처리 방안 논의(12월 정기회의(임원)/12.2)

: 미설치 세대 일정 조율하여 6개월 이내로 센터에서 필터교체 진행하도록 하여 사업 마무리 계획

: 필터교체 사업 완료에 따른 인수증 수령 예정

: 필터 교체 및 수령을 원치 않는 세대의 잔여 필터를 필터 추가 구매를 원하는 세대에 판매할지 여부 추후 논의 예정.

- 공기정화기 필터교체사업 지원결과

구분	계	1차 (계약금/8.7)	2차 (중도금/8.20)	3차 (잔금/10.12)	비고
금액	121,000,000	48,000,000	36,000,000	37,000,000	최종교체율91%

※ 와이시티 동별 교체현황

구분	계	101	102	103	104	105	106
교체율(%)	91	92	91	92	89	89	93

- 요구사항 : 폐 필터 및 잔여필터에 대한 처리방안 논의 필요

(관리센터 보관에 따른 문제점 발생과 시간경과에 따른 필터성능보장 문제발생 우려)

다) 해충방제 서비스 추진사업 결과

- 사업경과 현황

↳ 해충방제 서비스 사업 안건상정(7월 정기회의/7.1)

: 쥐 및 각종 해충 유입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역업체 선정을 요청하는 안

: 참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윈스턴파크에 썬더블루 4대 추가하여 세스코와 수의계약 진행하기로 함.

↳ 서비스 결과 주민지원협의체 통지요청(9월 정기회의/9.23/임원진)

: 서비스 결과 2020년10월부터 협의체 통지 됨

- 서비스계약 현황

계약기간	계약금액	설치현황
2020.7월 ~ 2022. 6월 (2년)	년1,680만원 (월 14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썬더블루 15대(와이시티11, 윈스턴4) • 구서방제서비스는 건물 외곽으로 설치

↳ 계약 특약사항

- : 계약의 특이사항에 결제는 당월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 : 일반방제 진행시 소독증명서를 발급한다.

- 결과

- : 월1회 서비스 진행 후 소독증명서를 발급해야하나 10월 이후 요청에 의해 발급(와이시티 관리센터에서도 협의체일로 치부하여 관심 밖 사항으로 인식)
- : 대금지급은 당월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7월3일 1,680만원을 일시 결제함

- 개선사항

- : 월1회 서비스 진행 후 소독증명서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확인/보관
- : 대금지급은 기금운용원칙과 계약사항에 따라 월별지급 요망

라) 윈스턴파크 외벽청소 사업추진 결과

- 사업경과 현황

↳ 윈스턴파크 1·2차 외벽청소 업체 선정(8월 정기회의/8.5)

- : 외벽청소 업체 선정 관련 2천만원 미만의 소액이므로 고양시 자원순환과 유권 해석결과 윈스턴파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 선정 후 최종 주민지원협의체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는 안.

- : 참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 윈스턴파크 1,2차 외벽청소 업체 재선정(9월 정기회의/9.23/임원진)

- : 윈스턴파크 1, 2차 외벽청소 기존 업체의 계약취소로 인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업체 재선정함.(10월 5일부터 작업 재 진행)

↳ 계약업체 현황

계약업체	1차(나노메딕)	2차(스테이원)
계약일자	9.1	9.25
대금지급	계약금30%(5,049,000/9.8)	공사금액 전액(16,830,000/10.21)
회수	9.22일	

- 결과

: 사업 진행에 따른 진행사항 공유, 증빙서류 및 증빙사진 등은 잘 구비되어있으나,

: 업체선정이 윈스턴파크 입대의에서 진행된 것은 협의체 업무진행사항에 위배되어 재검토 필요함.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금액 수의계약에 대한 확인결과 가능하나 아래사항 확인 필요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의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마) 냉.난방비 지원 사업추진 결과

- 사업경과 현황

↳ 1차 냉.난방비 지원 계획 결정(7월 정기회의/7.1)

: 참석위원 10명 전원 찬성, 세대별 균등지급(연간 예산의 50%를 8월 초에 지원하기로 함)

↳ 2차 냉.난방비 지원 계획(12월 정기회의/12.2/임원회)

: 1차 지원과 동일하게 2021년 2월 관리비에서 차감되는 형식으로 2021년 3월에 지원하기로 함

- 냉방비 지원결과

구분	대상	지급	협의체 지원액	실지금액
와이시티	2,404	2,403	216,270,000	215,912,980
윈스턴1차	126	126	11,340,000	11,340,000
윈스턴2차	108	106	9,519,680	9,519,680
내곡동	4	4	360,000	360,000
계	2,642	2,639	237,489,680	237,132,660

- 결과 : 내곡동 1세대에 대한 착오지급은 사무보조원의 세심한 업무처리로 9월 회수 처리함.

: 2020년 2차 미지원금 포함 2021년 3회 지원 계획 필요

바) 와이시티 커뮤니티시설 지원 사업추진 결과 : 11월 감사결과 대체

△ 정관개정 관련 사항

1. 정관개정 현황 : 2회/4건 개정

구분	현행	개정안
4월 정기회의(4.5) 박주용 위원장	<p>제12조 (회의)</p> <p>① (생략)</p> <p>② 정기회의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개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p> <p>③~⑧ (생략)</p>	<p>제12조 (회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정기회의는 매월 첫째 주 <u>수요일에 개최한다.</u>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p> <p>③~⑧ (현행과 같음)</p>
8월 정기회의(8.5) 김종표 감사	<p>제11조(협의체 의결사항 등)</p> <p>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협의체 의결이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을 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p>	<p>제11조(협의체 의결사항 등)</p> <p>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협의체 의결이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을 <u>협의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제12조 (회의)</p> <p>⑥ 회의는 협의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2조 (회의)</p> <p>⑥ 회의는 협의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단, 가·부 동수에 대한 의결 부결로 결정한다.)</u></p>
	<p>제15조(위원 의무 책임 등)</p> <p>② 위원에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다음의 한도액 내에서 주민지원기금으로 홍보활동비와 주민의견 수렴 및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한다.</p> <p>6. 반입쓰레기 성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샘플링에 참여시 일 50,0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p>	<p>제15조(위원 의무 책임 등)</p> <p>② 위원에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다음의 한도액내에서 주민지원기금으로 홍보활동비와 주민의견 수렴 및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한다.</p> <p>6. 반입쓰레기 성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u>샘플링에 참여시 건설부문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로 지급한다.</u></p>

2. 정관개정 필요사항 안전발의 : 4건

가) 정관개정 이유 : 상위법 및 시행령과 고양시 조례와의 법령충돌로 인한 정관 개정 필요

나) 정관개정사항

- 제6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자격이

없는 자

☞ 사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에 의거 관련내용 수정

↳ 개정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9조 (위원회 구성)

⑦ 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및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할 때
2. 위원으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때
4.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5.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3회 이상 불참할 때

☞ 사유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 개정내용 : 제9조의1 (위원의 해촉) : 개정 및 신설항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의 경우 해당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 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9조의1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 제9조의2 (위원의 제척) : 신설항목

☞ 사유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이해 관계인은 공정한 자문, 심의,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6조 (사무보조 및 수당)

③ 운영경비 지출시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시행하는 절차를 적용 내부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사유 :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이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명칭 개정됨(2020.9.11.)

↳ 개정내용 : ③ 운영경비 지출시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시행하는 절차를 적용 내부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 신·구문 대조표 : 붙임#1 참조

△ 기타사항 : 채용 및 추천에 관한 선정위원회 구성요망

- 현실태/문제점

: 협의체위원 전원이 면접/평가위원으로 구성되어 전문성 부족과 사전 공고문안 및 선정기준의 미흡으로 적격자 선정/추천이 제한됨

- 근거

: 폐촉법,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규칙 제2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선정위원회 구성 등)

① 동장은 조례 제17조제11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 5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개선사항

: 사무보조원 채용 및 협의체 추천인원에 대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채용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위원으로 협의체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

: 선정위원(안)

↳ 5명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위원2/지원자 중 의결을 거쳐 선정)

↳ 협의체 임기가 끝나 재 위촉된 위원중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선정위원으로 재위촉 할 수 없다.

※ 선정위원회 기능

1. 채용/추천과 관련한 심사기준 선정

2. 공고문안 작성 및 공고협조

3. 채용 및 추천인원에 대한 면접평가

4. 채용 및 추천결과 보고(사무보조원, 감시원, 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 등)

△ 총 평 / 주 문

2020년 주민지원협의체 종합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그동안 우리 주민지원협의체가 1월 29일 새로운 위원들로 고양시의 위촉을 받아 출발하여 나름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사업계획 토의/보고를 시작으로 주민편익시설 개선을 위한 고양시 담당부서 및 시의회 방문, 냉·난방비 지원, 와이시티 환기필터 교체, 커뮤니티 시설 개선지원, 윈스턴파크 외벽청소지원과 환경상영향평가 참여 등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회의 진행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 부족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이 어려웠고 그로인해 위원해촉이라는 결과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 및 예산회계 지침 미 준수 부분이 발견 되었으나 이는 처음 진행하는 사업으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분들은 주민지원기금 실적 및 정산보고시 보완하여 회계처리 지침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주시길 바라며, 향후 2021년 사업 진행시 철저한 사전 준비로 법률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결과 개인적으로 혹시 섭섭하신 분이 계시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라며, 미흡한 감사결과지만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붙임#1

□ 정관개정 신·구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자격이 없는 자 	<p>제6조(주민지원협의체 위원)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제9조 (위원회 구성) ⑦ 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및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할 때 2. 위원으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때 4.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5.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3회 이상 불참할 때 	<p>제9조의1(위원의 해촉) : 개정 및 신설항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의 경우 해당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 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9조의1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p>	

현행	개정안
<p>없음(신설항목)</p>	<p>제9조의2 (위원의 제척) : 신설항목</p> <p>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p> <p>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p> <p>③ 해당 안건의 이해 관계인은 공정한 자문, 심의,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p>
<p>제16조 (사무보조 및 수당)</p> <p>③ 운영경비 지출시 “<u>고양시 재무회계 규칙</u>”에서 시행하는 절차를 적용 내부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p>	<p>제16조 (사무보조 및 수당)</p> <p>③ 운영경비 지출시 “<u>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에서 시행하는 절차를 적용 내부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p>